

노인학대 예방 자료

노인학대란?

노인학대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하거나
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어르신이 보내는
작은 신호,
손끝으로 보내는
소중한 관심





노인학대 유형의 분류

1 |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

가정학대, 시설학대, 기타

2 |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

- 신체적 학대
- 정서적 학대
- 성적 학대
- 경제적 학대
- 방임(자기방임)
- 유기





1.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

가정학대

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,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

시설학대

노인에게 비용(무료포함)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

기타

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



2.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



신체적 학대



정서적 학대



성적 학대



방임(자기방임)



경제적 학대



유기

신체적 학대


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
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
유발시키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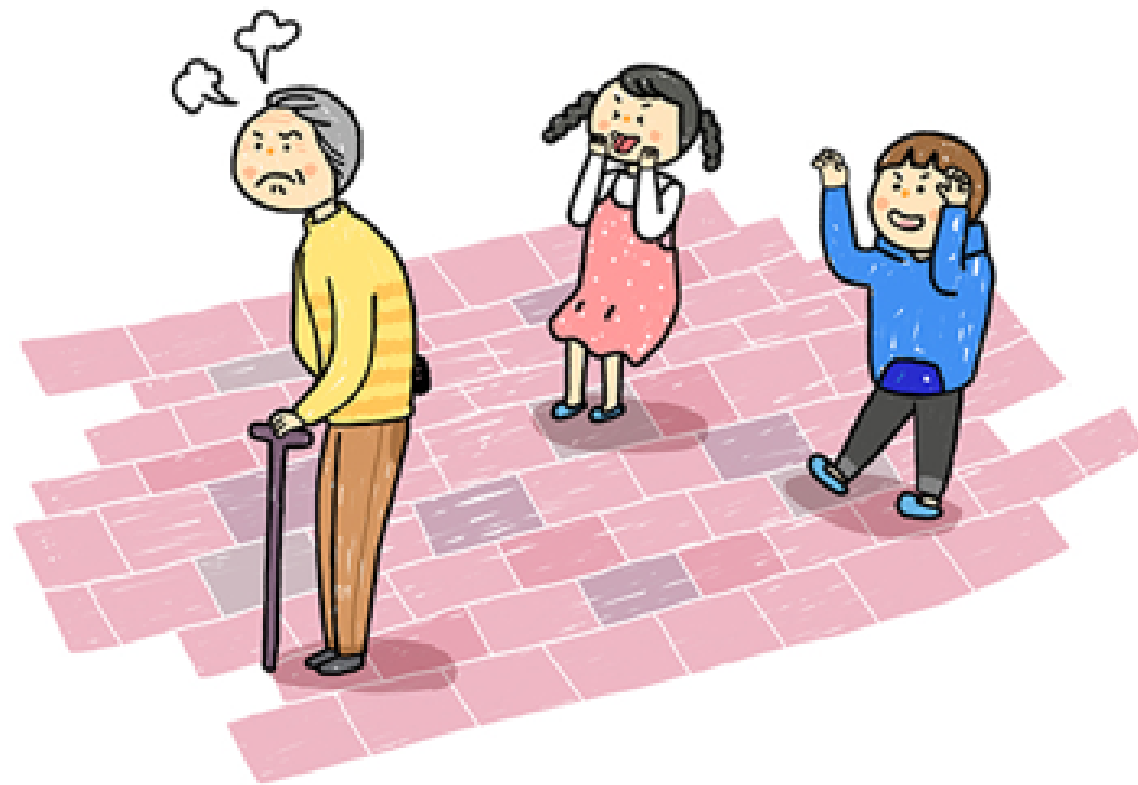
신체적 학대 대표적 행위

-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
- 감금이나 거주지 출입 통제 행위
-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
-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
-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, 식사, 음료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
-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
- 원하지 않는 일(노동)을 강요하는 행위

예측징후

-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
-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
-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
-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, 체중감소
- 묶인 흔적 또는 상처
-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

정서적 학대



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
정서적 학대 대표적 행위

-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
-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
- 일상생활(식사, 일상물품 사용 등)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
- 사회활동,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
- 위협, 협박하는 행위
- 고함, 욕설 등을 하는 행위
-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

예측징후

-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
-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
-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
-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
-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
-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 보는 모습
-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회피하는 모습

성적 학대



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성적 학대 대표적 행위

-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및 시도 행위
-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혹은 신체일부를 만지는 행위
-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
- 사람들이 보고있는데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케어를 실시하는 행위

예측징후

-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
- 속옷이 찢어짐
-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
-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
- 성병진단
- 분노 또는 수치심
-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



경제적 학대

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

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

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

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
경제적 학대 대표적 행위

-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, 연금, 재산,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
-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
-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
-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
-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,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
예측징후

-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
-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
-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
-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- 공적부조를 가로챈
-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
-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

방임



**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
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
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**

(필요한 생활비,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
방임 대표적 행위

- 스스로 식사, 배변처리,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
-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
-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
-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
-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

예측징후

- 대소변 냄새, 악취, 땀띠, 염증,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
- 머리, 수염, 목욕, 손톱,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
- 노인의 건강, 주변환경의 안전위험 증후
-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



자기방임


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
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
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
자기방임 대표적 행위

- 노인 스스로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
-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노인 스스로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
-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
-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지속

예측징후

-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
- 노인 스스로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의식주를 거부함
- 자살을 시도함
- 우울감과 무기력함



유기

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유기 대표적 행위

-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는 행위
- 노인을 시설,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,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
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
-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

예측징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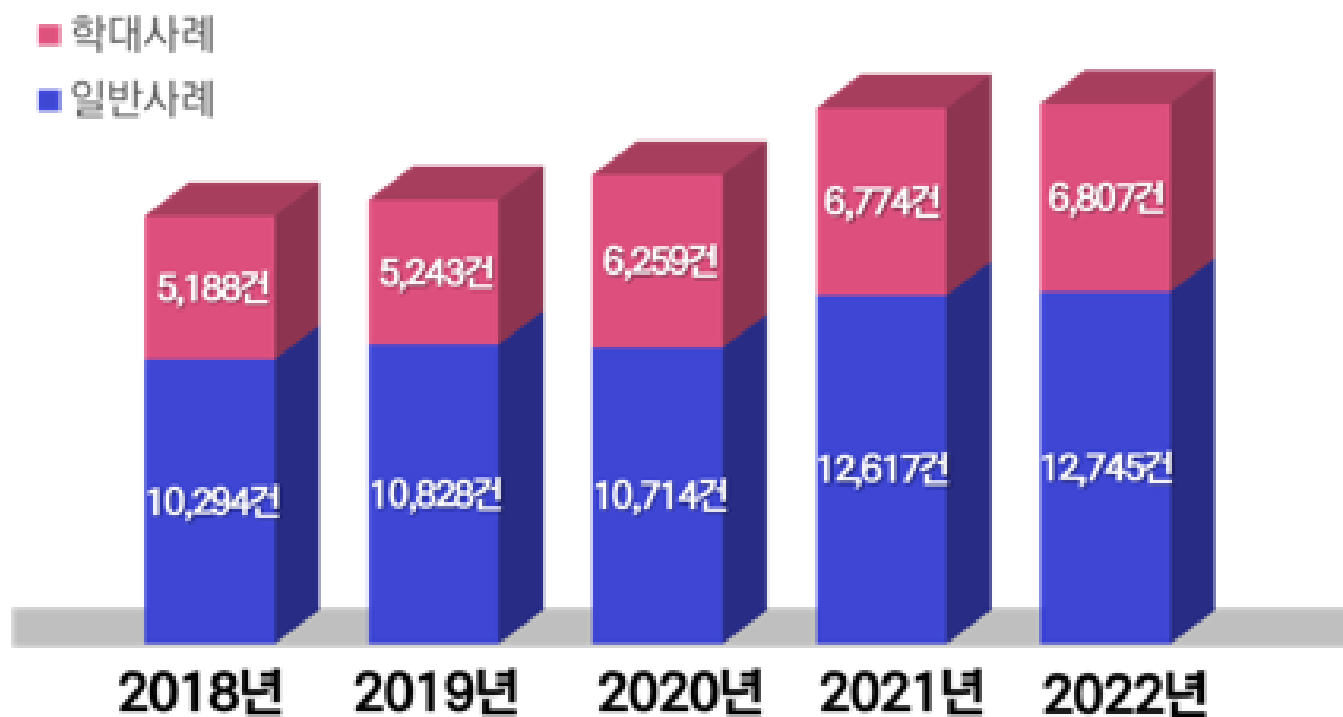
-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
-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
-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-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

2022 노인학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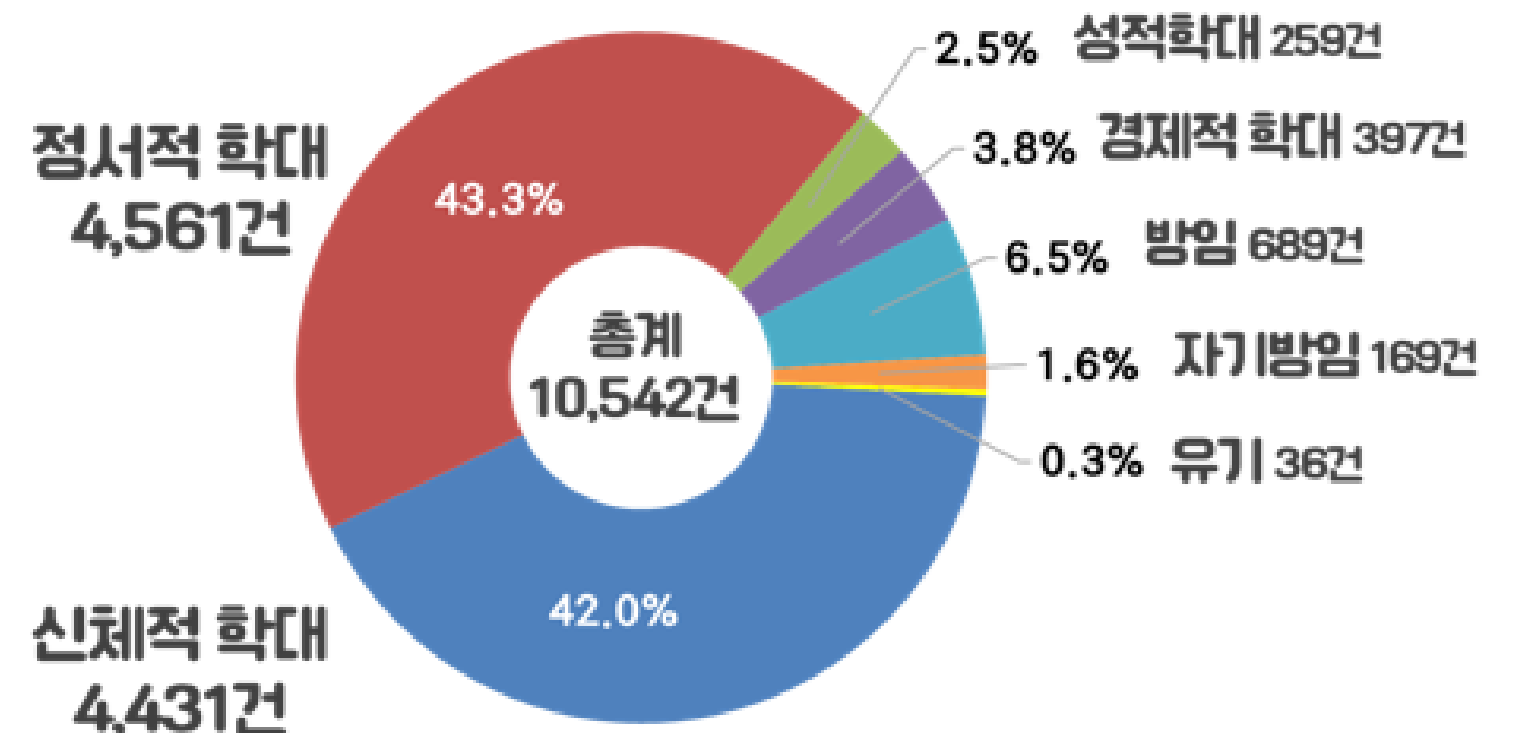
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(보건복지부,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)

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건수

전체 신고건수 | 19,552건, 노인학대 판정건수 | 6,807건 (신고대비 34.8%)



연도별 신고건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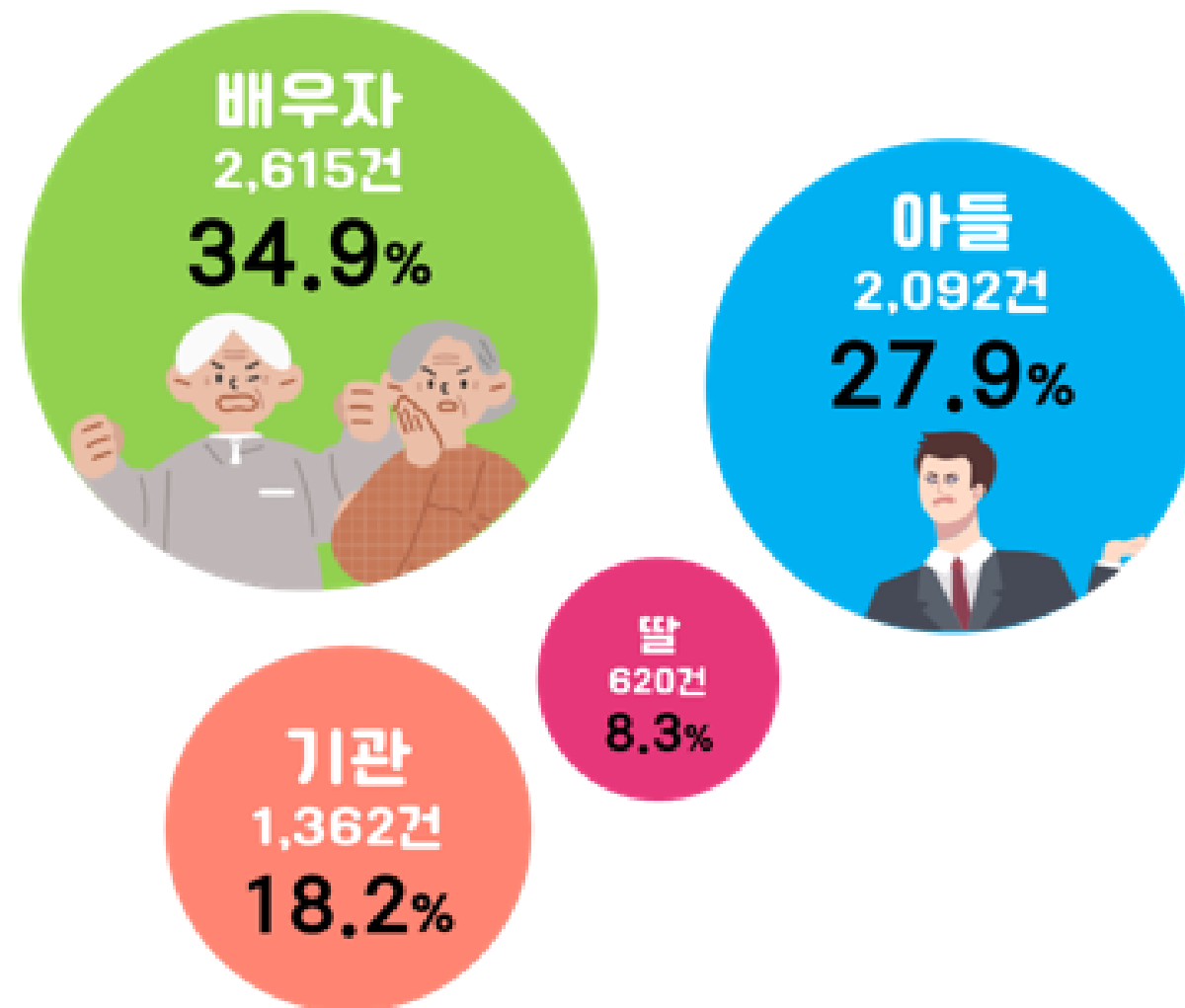
노인학대 유형

* 중복학대 건 포함하여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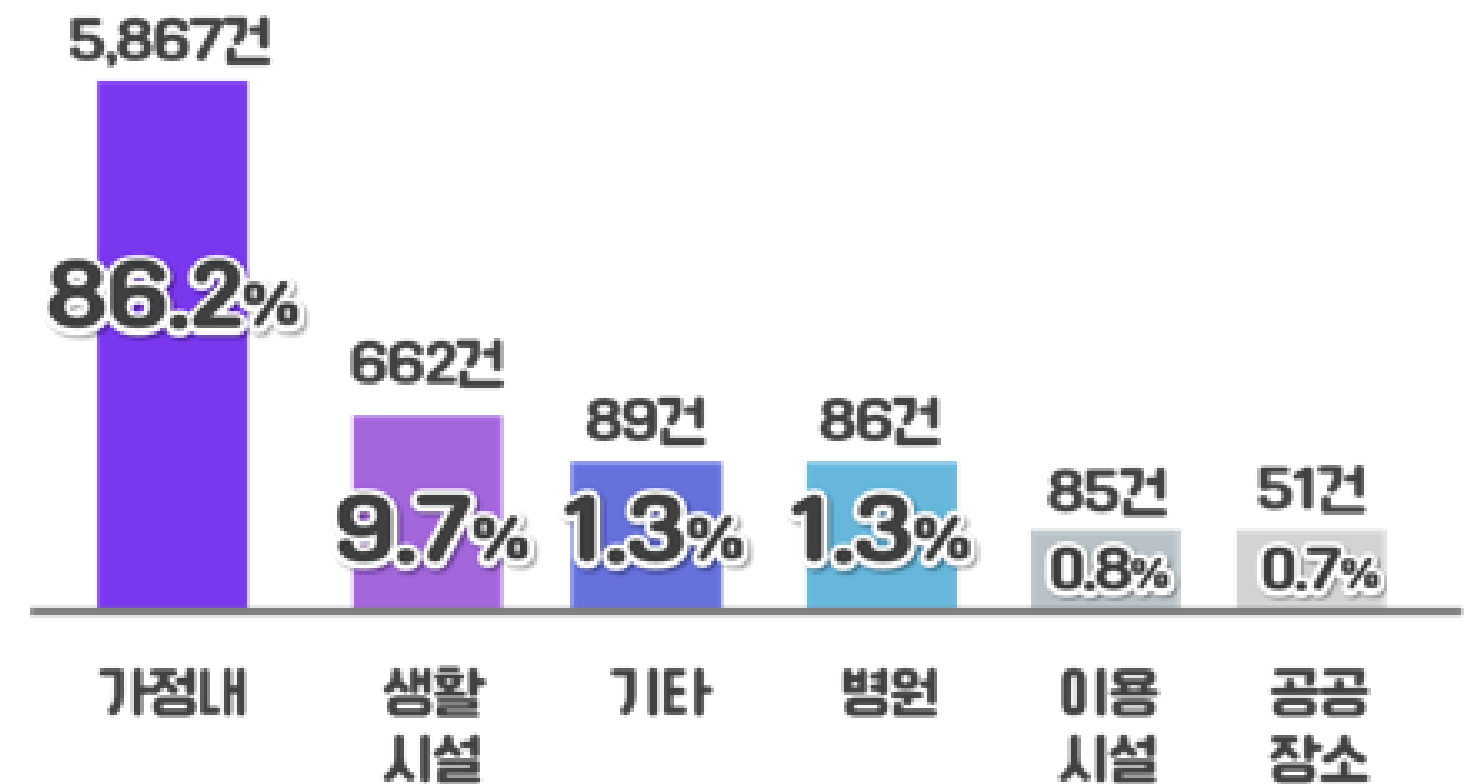
2022 노인학대 현황

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(보건복지부,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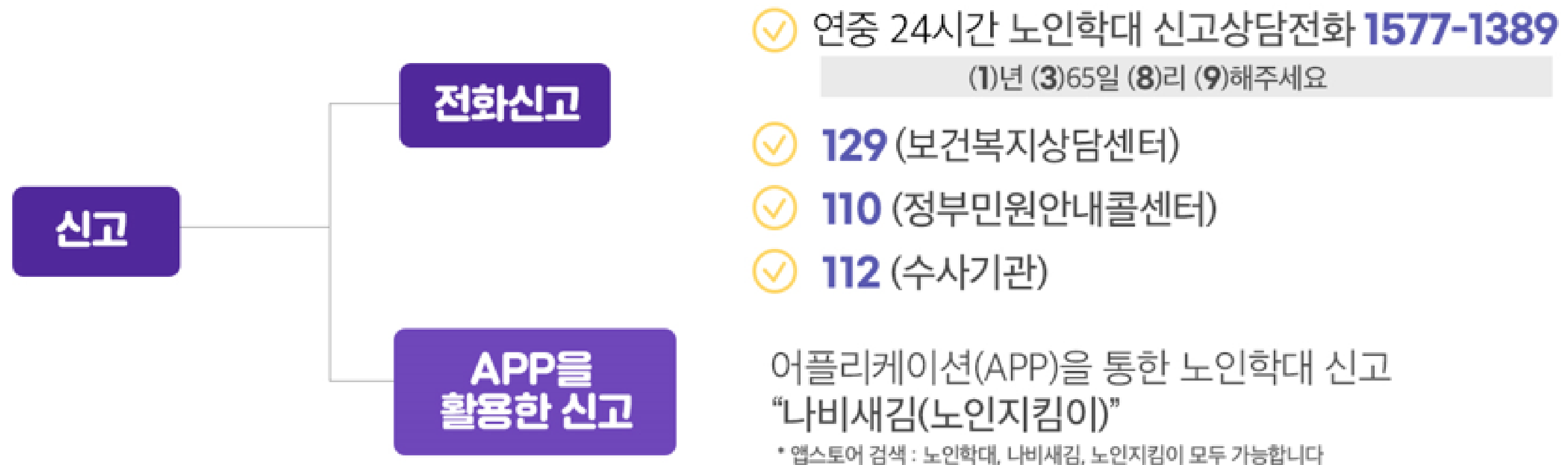
학대행위자 유형



학대 발생 장소



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| ① 신고



① 기타,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,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



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| ② 접수

- 학대피해 의심 노인 이름, 주소, 연락처, 학대상황 파악

기억해주세요!

신고시 학대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(학대피해의심노인, 학대의심행위자 등)를 알려주시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.

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| ③ 현장조사

- 학대피해 관련 장소 조사
- 학대신고 관련자 조사
 - 학대피해노인, 학대행위자 조사
 - 신고자, 목격자, 이웃 등 관련자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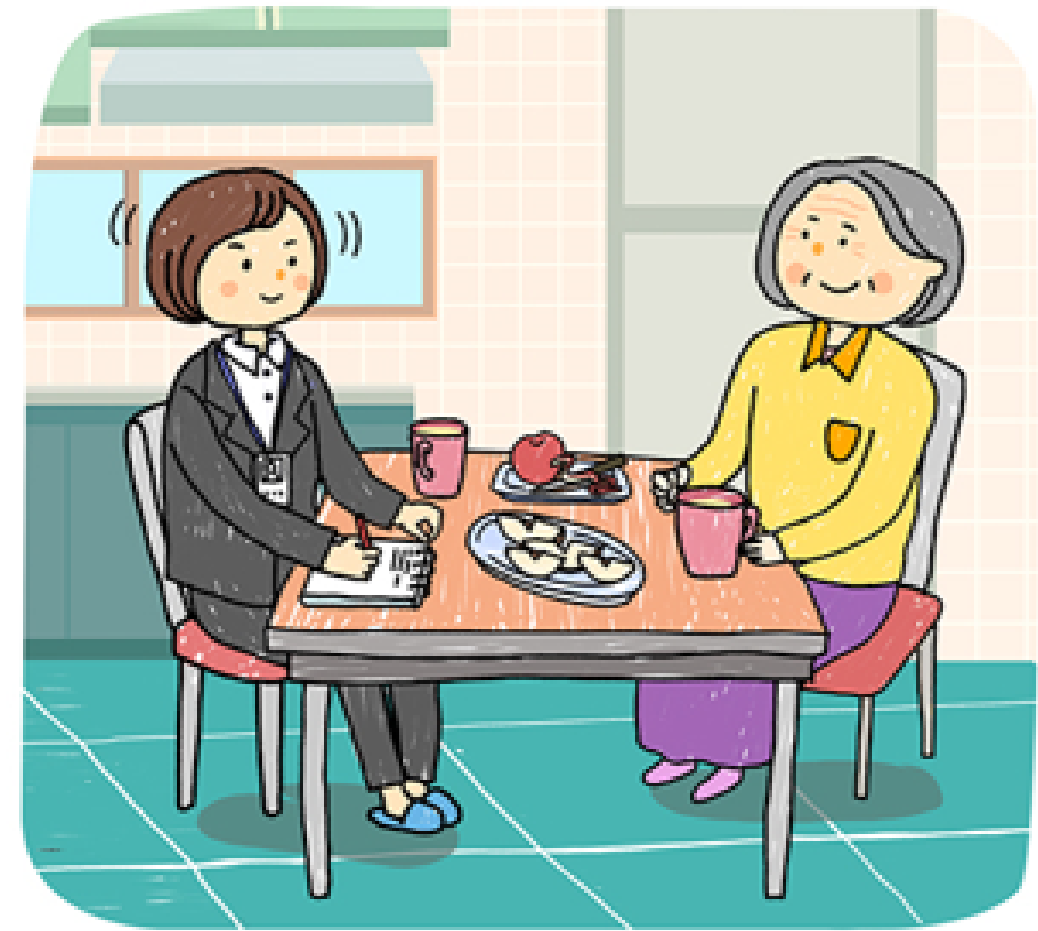


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| ④ 노인학대 사례 판정

- 노인학대 사례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
 -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회의
 -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

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| ⑤ 서비스 제공

- 학대피해노인의 의사와 욕구를 존중하여 서비스 계획 수립 후 상담, 법률, 의료, 쉼터입소 등 서비스 제공



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| ⑥ 평가 및 종결

- 학대 피해노인 안전 확인 및 지원이 완료된 경우 사례 종결

시설학대의 경우

⑥ 보고 및 조치 | 사례판정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



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 | ⑦ 사후관리

-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안전 유지,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
및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

시설학대의 경우

⑦ 평가 및 사후관리 | 학대피해노인 안부 확인 및 학대행위자(시설 및 시설관계자 등)
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함



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

1577-1389

